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6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7일

발 의 자 : 김동식, 오현정, 봉양순, 이병도
의원 (4명)

찬 성 자 : 김혜련, 서윤기, 이영실, 김화숙,
이정인, 김소양, 김종무, 유 용,
김상훈, 이호대, 오한아, 최 선,
황규복, 노승재, 이은주, 정진철,
채인목, 최영주, 김춘례, 안광석,
최정순, 김기덕, 성흠제, 강대호,
김평남, 김정태, 김용연, 이상훈
의원 (28명)

1.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강돌봄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

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2,000,000천원)

-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

$$= \sum_{i=1}^5 (\text{연간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서울시 건강돌봄지원단 운영비

$$= 400,000\text{천원}$$

※ 참고) 유사형태의 서울시 사업지원단 예산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감염병관리지원단 612,666천원/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 350,000천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금연분과) 400,000천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60,000천원/ 아동자립지원단 310,977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 운영

- 사업목적 : 보건소·지역사회 연계한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로 어르신 등이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포괄케어 구현에 기여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사업내용
 - 서비스 대상 : 건강고위험군(방문건강관리, 의료기관, 지역사회 발골의뢰)
 - 사업내용 : 대상자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건강돌봄 기반 조성 및 운영
 - ① 건강돌봄 기반 조성 : 신규 참여구 확대 운영, 의사 역량강화 교육, 매뉴얼·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대시민 홍보 활동, 자치구 사업 추진 지원 등
 - ② 시민 중심의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 케어플랜 : 포괄적 건강(신체,정신,사회)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 ▶ 케어서비스 : 만성질환(특히 당뇨병) 관리, 영양 집중관리, 방문재활, 질환교육 등
 - ▶ 케어리퍼 : 상급(시립)병원, 민간병의원, 정신 등 전문 관리센터
 - ▶ 지속관리 : 연계 결과 관리, 입원환자 퇴원 후 연계 관리
- 운영규모 : 10개 구(기존 4, 신규 6)
- '19년 예산 : 1,505백만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홍보사업

- 사업목적 : 지역포괄케어 건강분야 선도정책인 서울시 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자 참여율 제고 위한 지속 홍보로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
- 근거 : 「맞춤형 포괄케어를 위한 시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계획」 (’18. 11. 13)
- 홍보사업 내용
 - 건강돌봄 포럼‘서울 시민 건강돌봄서비스 선포식’
 - 건강돌봄 체험마당(시민참여형) 개최
 - 언론사, 지하철 등 매체 홍보
 - 인쇄물, 홍보 Kit 활용 홍보 등
- '19년 예산 : 90백만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무관리·지역포괄케어 대시민 홍보 등)